

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

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후단 중 “자로”를 “자(이하 “공제조합 가입자”)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, 영 제18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인 제품·포장재로 규정되어 재활용의무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도 시행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접수된 재활용 의무생산자 명단을 공제조합 가입자로 본다.

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중 “매입매출원장”을 “매입매출원장 및 폐기물수탁 재활용관리대장”으로 한다.

제5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등급조사에 한하여 유통지원센터에 소속된 재활용수탁자를 대상으로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르는 경우 유통지원센터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. 단, 조사할 수 있는 대상규모 등 세부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.

제59조제1항 본문 중 “3회”를 “2회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의 경우 종류별 및 재질별로 회수·재활용실적 중 당해연도 의무량을 초과한 품목의 실적을 의무량을 미달한 품목의 실적으로 미달량 이내에서 전환할 수 있다. 이와 관련한 실적 전환 한도와 세부 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사항을 입력한 경우 해당자료
로 같음하며, 매입매출원장은
익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
있다.

2. 3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제56조(조사주체) ① (생략)

② 삭제

<신설>

제59조(조사횟수) ① 제47조제1항
제4호에 따른 회수실적 조사는
연간 3회 이상, 반기별 1회이상,
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등급
조사 및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
른 비대상혼입률 조사를 포함하
여 실시하되 조사대상은 공단
이사장이 정한다. 다만, 보증금
대상사업자의 비대상혼입률 조

----- 매입매출원장 및
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--
--.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56조(조사주체) ① (현행과 같
음)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제47조
제1항제6호에 따른 등급조사에
한하여 유통지원센터에 소속된
재활용수탁자를 대상으로 공단
이사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르는
경우 유통지원센터에서 조사를
할 수 있다. 단, 조사할 수 있는
대상규모 등 세부기준은 공단
이사장이 정한다.

제59조(조사횟수) ① -----

---- 2회 -----

-----.

사는 최근 3년 평균 조사값이 0.1퍼센트 미만인 경우 연 1회로 조사횟수를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 활용실적 조사는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며, 해당 연도 재활용부 과금 고지일인 7월 31일 이전까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0조제2항에 따라 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를 분기별로 접수한 경우 재활용실적을 분기별로 조사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제10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회수·재활용실적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수·재 활용실적에 대한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61조(회수·재활용실적 인정방법) ① (생략)

<신설>

② -----

<단서 삭제>

③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⑤ (현행과 같음)

제61조(회수·재활용실적 인정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폴리에

② · ③ (생략)

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의 경우
종류별 및 재질별로 회수·재활
용실적 중 당해연도 의무량을
초과한 품목의 실적을 의무량을
미달한 품목의 실적으로 미달량
이내에서 전환할 수 있다. 이와
관련한 실적 전환 한도와 세부
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
는 바에 따른다.

③ · 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
같음)